

200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

의안번호
2001-38

제안연월일 : 2001.11.

제안자 : 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취득코자 하는 재산(거창읍 가지리 산168-1번지, 공동묘지 진입로 부지)
 - 현 장사법등시행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군민의 납골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
 - 거창읍 가지리 소재 공동묘지(소유:거창군)에 거창읍 공동사용 납골묘(약 500기)설치 및 공동묘지를 정비코자 하나
 - 진입도로가 없어서 납골묘 및 공동묘지 정비 사업시행과 향후 본 공동묘지 이용에 문제점이 되두되고 있음
 - 따라서 금회에 공동묘지(납골묘)의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공동묘지(납골묘)관리 및 이용에 편의를 도모코자 함
- ⇒ 부지매입계획 : 토지(임야) 1,516㎡(459평)

2. 취득재산의 표시

(단위 : ㎡, 천원)

구분	재산종별	재산소재지	지목	수량	예정금액 (공시지가)	비고
취득	토지	거창읍 가지리 산168-1번지 (총 면적 18,043㎡중 1,516㎡)	임야	1,516㎡	854천원	공시지가 ㎡당 563원

※ 위 예정금액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확정금액이 아님으로
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.

3. 근거 및 참고자료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: 공유재산 관리계획
-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36조 : 공유재산관리계획
-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: 공유재산관리계획서